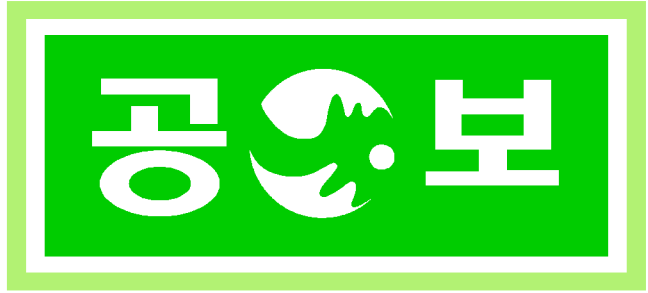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공 람	기 관 의 장

제 1016 호 2016. 7. 14. 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16호[달천농공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18호[도로명주소 고시] 9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19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1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20호[하천 점용허가 고시] 13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673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 14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☎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	---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6 - 116호

달천농공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

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300번지 일원의 달천농공단지계획 변경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청 창조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.

2016년 7월 1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사업의 명칭·위치 및 면적(변경)

가. 명 칭 : 달천농공단지

나. 위 치 :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300번지 일원

다. 면 적

구 분	기 정	변 경
위 치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300번지 일원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300번지 일원
면 적	262,431.7㎡	259,634.3㎡ (감 2,797.4㎡)

라. 변경사유 : 모바일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공공시설 이용 및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과 중복된 구역계 조정

2. 사업의 목적

-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회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,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공업입지공급

3.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(변경없음)

- 울산 공동화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병우
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(변경없음)

가. 개발기간 : 1997년 ~ 1999년

나. 시행방법 :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

5.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(변경없음)

가. 유치업종

- 기계 및 조립, 금속 제조업 등(무공해업종)

나. 업종별 배치계획

- 공동화사업 관리기본계획상의 유치업종

6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(변경)

가. 용도지역계획(변경)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262,431.7	감) 2,797.4	259,634.3	100.0	
자연녹지지역	9,420.9	감) 2,377.0	7,043.9	2.7	
일반공업지역	253,010.8	감) 420.4	252,590.4	97.3	

나. 세부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 분	면 적		증 감	비 율	비 고
	기 정	변 경			
합 계	262,431.7	259,634.3	감) 2,797.4	100.0	
분 양 면 적	194,108.2	194,108.2	-	74.76	
단 지 내 도로	36,400.5	34,238.70	감) 2,161.8	13.19	
공동폐수처리상	1,930.6	1,930.6	-	0.74	
공동이용시설용지	5,867.7	5,867.7	-	2.26	
미분양사면 및 기타	21,124.7	23,489.1	감) 635.6	9.05	
공 공 녹 지	18,164.2	17,528.6	감) 635.6	6.76	
공 공 주 차 장	3,565.0	3,565.0	-	1.37	
도 지 면 적	2,395.5	2,395.5	-	0.92	203-3인

다. 주요 기반시설계획(변경)

1) 총 괄

구 분	도 로		주 차 장		공 원 · 녹 지		수질오염방지시설	
	기 정	변 경	기 정	변 경	기 정	변 경	기 정	변 경
면 적 (㎡)	36,400.5	34,238.7	3,565.0	3,565.0	18,164.2	17,528.6	1,930.6	1,930.6

2) 도 로(변경)

가. 도로(변경) 조서

구분	합 계			1류			2류			3류		
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
합계	14	2,859 (3,026)	32,435.4 (34,940.4)	-	-	-	-	-	-	-	-	-
중로	3	1,008 (1,175)	14,420.0 (16,925.0)	-	-	-	1	308 (475)	4,620.0 (7,125.0)	2	700	9,800.0
소로	11	1,851	18,015.4	9	1,674	16,763.4	1	95	760.0	1	82	492.0

주) 도로면적 합계는 각각부 면적 1,803.3㎡ 제외면적임

*()는 기정 개발계획상의 도로연장 및 면적임

나. 도로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 용	변 경 사 유
중로 2-151	중로2-151	노선축소 (감 L=475m → 308m)	· 농공단지진입도로와 도시관리계획 (중로1-336)이 중복 되는 구간 제척
소로 1-52	소 1-52	일부구간 선형변경	· 달천농공단지 진입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선형변경
소로 2-319	소 2-319	일부구간 선형변경	· 달천농공단지 진입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선형변경

3) 공 원

가. 공원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44	소공원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03-2번지	1,156.2	-	1,156.2	10.4.8 울(북)고 28호	

4) 녹 지(변경)

가. 녹지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418	녹지	완충 녹지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20번지 일원	7,500.2	감) 131.0	7,369.2	10.4.8 울(북)고 28호	
기정	419	녹지	완충 녹지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22번지 일원	973.9	-	973.9	10.4.8 울(북)고 28호	
변경	420	녹지	완충 녹지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4-3번지 일원	1,752.9	감) 504.6	1,248.3	10.4.8 울(북)고 28호	
기정	421	녹지	완충 녹지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8-1번지 일원	6,781.0	-	6,781.0	10.4.8 울(북)고 28호	

나. 녹지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418	완충 녹지	면적감소 A= 7,500.2㎡ → 7,369.2㎡	· 모바일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한 입지 여건을 고려한 녹지 조성
420	완충 녹지	면적감소 A= 1,752.9㎡ → 1,248.3㎡	· 도로(중1-336호선)중복구간 정비에 따른 녹지 조정

5) 주차장(변경)

가. 주차장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203	주차장	북구 달천동 207-5번지 일원	1,653.0	-	1,653.0		
기정	204	주차장	북구 달천동 212-8번지 일원	1,009.1	-	1,009.1		
기정	205	주차장	북구 달천동 214-2번지 일원	902.9	-	902.9		

6) 수질오염방지시설(변경없음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3	폐수 처리장	폐수종말 처리시설	북구 달천동 212-10번지 일원	1,930.6	-	1,930.6	00.3.4 울고33호	

7.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관한사항
 [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]

가. 도 로

1) 도로 총괄조서

구 분	합 계			1류			2류			3류		
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
합 계	14	2,859	32,435.4	-	-	-	-	-	-	-	-	-
중 로	3	1,008	14,420.0	-	-	-	1	308	4,620.0	2	700	9,800.0
소 로	11	1,851	18,015.4	9	1,674	16,763.4	1	95	760.0	1	82	492.0

주) 도로면적 합계는 각각부 면적 1,803.3㎡ 제외면적임

2) 도로 세부조서

구 분	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중 점	사 용 형태	주 요 과 지	최 결 정 일	비 고
	등급	류 별	번호	폭 원 (m)								
기정 중로	2	151	15	집산도로	475	79호 광장	중3-174	일반도로	달천농공단지			'00.3.4 울고33호
변경 중로	2	151	15	집산도로	308	중3-336	중3-174	일반도로	달천농공단지			노선축소
기정 중로	3	174	14	집신도로	195	중2-151	소1-47	일반도로	달천농공단지			'00.3.4 울고33호
기정 중로	3	173	14	집산도로	505	중3-174	소1-51	일반도로	달천농공단지			'00.3.1 울고33호
기정 소로	1	46	10	국지도로	101	소1-47	북구 달천동 218-4	일반도로				'00.3.4 울고33호
기정 소로	1	47	10	국지도로	370	중3-173	북구 달천동 208-1	일반도로				'00.3.4 울고33호
기정 소로	1	48	10	국지도로	78	중3-174	북구 달천동 208-6	일반도로				'00.3.4 울고33호
기정 소로	1	49	10	국지도로	95	소1-47	북구 달천동 203-8	일반도로			'00.3.4 울고33호	04.12.6 울북고49호
기정 소로	1	50	10	국지도로	367	중2-151	중3-173	일반도로				'00.3.4 울고33호
기정 소로	1	51	10	국지도로	236	중3-173	소2-319	일반도로				'00.3.4 울고33호
기정 소로	1	52	10	국지도로	218	중3-173	소2-319	일반도로				'00.3.4 울고33호
변경 소로	1	52	10	국지도로	218	중3-173	소2-319	일반도로				선형변경
기정 소로	1	53	10	국지도로	128	중3-173	북구 달천동 221	일반도로				'00.3.4 울고33호
기정 소로	1	72	10	국지도로	81	소1-46	북구 달천동 201-1	일반도로				
기정 소로	2	319	8	국지도로	95	소1-51	소1-52	일반도로				'00.3.4 울고33호
변경 소로	2	319	8	국지도로	95	소1-51	소1-52	일반도로				선형변경
기정 소로	3	2	6	국지도로	82	소1-50	북구 달천동 211-5	일반도로				'00.3.4 울고33호

3) 도로 결정(변경)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중로 2-151	중로2-151	노선축소 감) L=475m → 308m	· 농공단지진입도로와 도시관리계획(중로1-336)이 중복되는 구간 제척
소로 1 52	소로 1 52	중점명 변경	· 달천농공단지 진입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선형변경
소로 2-319	소로 2-319	중점명 변경	· 달천농공단지 진입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선형변경

나. 공 원

1) 공원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조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44	-	소공원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03-2번지	1,156.2	-	1,156.2	10.4.8 울(북)고 28호	

다. 녹 지

1) 녹지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조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418	녹지	완충녹지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20번지 일원	7,500.2	감) 131.0	7,369.2	10.4.8 울(북)고 28호	
기정	419	녹지	완충녹지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22번지 일원	973.9	-	973.9	10.4.8 울(북)고 28호	
변경	420	녹지	완충녹지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4-3번지 일원	1,752.9	감) 504.6	1,248.3	10.4.8 울(북)고 28호	
기정	421	녹지	완충녹지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8-1번지 일원	6,781.0	-	6,781.0	10.4.8 울(북)고 28호	

2) 녹지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 사유
418	완충녹지	면적감소 B- 7,500.2㎡ → 7,369.2㎡	모바일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화 연결한 입지여건을 고려한 녹지 조정
420	완충녹지	면적감소 B- 1,752.9㎡ → 1,248.3㎡	도로(중1-336호선)중복구간 정비에 따른 녹지 조정

라. 주차장

1) 주차장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203	주차장	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07-5번지	1,653.0		1,653.0	10.4.8 울(북)고 28호	
기정	204	주차장	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2-8번지	1,009.1		1,009.1	10.4.8 울(북)고 28호	
기정	205	주차장	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4-2번지	902.9	-	902.9	10.4.8 울(북)고 28호	

마. 수질오염방지시설

1)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3	폐수 처리장	폐수종말 처리시설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2-10번지	1,930.6		1,930.6	'00.3.4 울고33호	

8. 관련도서 열람방법

- 관계도면에 대하여는 계재를 생략하며,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창조경제과(☎ 052-241-7712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18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7월 1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4길 62(산하동)외 6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시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7.1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신하계구 758-14L	울산광역시 북구 해운7길 62(신하동)	2016-07-14	회입가를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	2014-05-07	
2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37-2	울산광역시 북구 지전2길 4(양정동)	2016-07-14	북쪽과 서쪽가편이 산선들이 선난을 지대 양곡과 소곡을 개마하년 귀으로 이따부터 지 전이라 불리었고 불드준에 있는 나라마을이라는 뜻으로 옛 지명을 그대로 살려 도로명 을 부여하였다	2004-01-05	
3	울산광역시 북구 중신동 1270-4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-선영1길 9(중산동)	2016-07-14	중산 선영단지 내부도로라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	2015-02-02	
4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54-6	울산광역시 북구 양동5길 15(양정동)	2016-07-14	예로부터 양정동은 양정, 양동, 지전마을로 각각 나뉘어 불리었던 곳으로 지역의 특성 을 반영하고 지역통이라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5	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-174	울산광역시 북구 괴정1길 42(신천동)	2016-07-14	기존 자연마을인 괴정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1-09	
6	울산광역시 북구 중신동 1277-1 외 2필지 (1277-2,1277-3)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-서로 19(중산동)	2016-07-14	중산지구 서쪽에 위치한 도로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7	울산광역시 북구 중신동 1289-10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-1길 15(중신동)	2016-07-14	남정동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	2013-12-30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-119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7월 14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치전2길 4(양정동)외 1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7. 14.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치전2길 4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37-2	2016-07-14	건축물 멸실	
2	울산광역시 북구 양동5길 15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54-6	2016-07-14	건축물 멸실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 - 120호

하천 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7월 1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동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

나. 주소 : 울산 북구 산업로 1103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활주로 식별 유도 표지판 설치
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신천동 383-3번지 외 2필지

나. 면적

- 일시 : 164㎡

- 영구 : 40㎡
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

가. 일시 : 2016.07.14.~2016.12.31.

나. 영구 : 2017.01.01.~2020.12.31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673호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7월 1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금·토·공휴일 전일의 숙직 근무자와 토·공휴일 일직 근무자의 건강관리와 원활한 당직운영을 위하여 휴무일을 보장하고, 재택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당직근무자의 휴무
 - 금·토·공휴일 전일의 숙직 근무자와 토·공휴일 일직 근무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
- 재택 당직근무자 수당 지급
 - 재택 당직근무자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 당직수당을 지급

3. 근거법규

○ 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7조

4. 입법문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4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제출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총무과
- 전화번호 : 052-241-7203, 팩스번호 : 052-241-7209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 일부개정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“(숙직근무자의 휴무)”를“(당직근무자의 휴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숙직근무자(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”를 “당직근무자(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)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금·토·공휴일 전일 숙직 및 토·공휴일 일직근무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사무실 대기 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5조(숙직근무자의 휴무)</p> <p>숙직근무자(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 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당직근무자의 휴무)</p> <p>당직근무자(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)는 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금·토·공휴일 전일 숙직 및 토·공휴일 일직근무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</p> <p>⑤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, 평일 숙직수당과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·숙직수당은 차등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재택 당직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6조</p> <p>⑤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, 평일 숙직수당과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·숙직수당은 차등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사무실 대기 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.</p>	